|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프로젝트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  회발[2014] 2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닝보시분국, 각 중자은행:  자본프로젝트 외환관리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행정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며 무역투자 편리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자본프로젝트 외환관리 방식을 진일보 개선하고 자본프로젝트 외환관리 시책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이로써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융자리스형 회사 대외채권 외환관리 간소화  (1) 융자리스형 회사는 은행업 감독관리부문 심사비준 설립의 금융리스회사, 상무주관부문 심사비준 설립의 외상투자리스회사 및 상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연합하여 확인한 내자융자리스회사 등 3종류의 주체를 포함한다.(이하 융자리스형 회사라고 통칭한다.)  (2) 융자리스형 회사 또는 그 프로젝트 회사는 대외융자리스업무를 전개할 때, 융자리스 대외채권 발생후 15 영업일 내 아래 자료를 가지고 소재지 외환국에서 융자리스 대외채권 등기를 처리하고 소재지 외환국은 거래의 합리성과 진실성을 심사비준 해야 한다.  ① 회사기본상황과 리스프로젝트의 기본상황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 신청서  ② 주관부문이 동의한 융자리스회사 또는 프로젝트회사 설립의 회답문건과 공상 영업집조  ③ 전년도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보고와 최근 1분기 재무보고  ④ 리스계약과 리스물 이전의 증명자료 (통관신고서, 비안명세서, 세관신고서 등과 같음).  (3) 융자리스형 회사는 대외융자리스업무를 전개할 때, 현행 경내기업 경외대출한도액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4) 융자리스형 회사는 직접 소재지 은행에서 대외융자리스∙임대료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경외대출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상술한 외화자금을 기장할 때, 은행은 해당 수입의 자금출처를 심사해야 한다. 해당 계좌내의 외환수입으로 외환결제를 하고자 할 때, 융자리스형 회사는 직접 은행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5) 소재지 외환국은 자본프로젝트 정보시스템에서 “경외대출”기능을 사용하여 융자리스형 회사의 융자리스 대외채권 계약정보를 등기하고 서면 보고표를 취하여 인출정보를 집계한다.  융자리스형 회사가 대외융자리스∙임대료 수입을 받을 때, 국제수지의 유관 신청보고 요구에 따라 신청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외환국승인번호/비안보고번호/업무일련번호”란에 그 대외채권의 업무일련번호 기입해야 하고 매월 소재지 외환국에 융자리스 대외채권의 발생과 임대료 수입 등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은행은 자본프로젝트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외융자리스∙임대료 수입 등 정보를 피드백 해야 한다. 자본프로젝트 정보시스템 유관모듈기능을 완벽히 정비한 후 새로운 요구에 따라 관련정보를 수집한다.  2.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외환관리  (1) 국가외환관리국의 금융자산관리회사 불량자산 대외처리 관련 외환수지와 환어음 심사비준의 사전준비 관리를 취소한다.  (2)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수속 간소화. 유관주관부문이 비준하여 경내기구가 경외투자자에게 불량자산을 양도한 후 30일 내 경내불량자산 양수의 경외투자자 또는 경내대리인은 아래 자료를 가지고 주요자산 소재지 외환국 또는 경내대리인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수속을 처리한다.  ① 신청서,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표> 기입 (첨부 참고)  ② 유관주관부문이 비준한 경내기구 불량자산의 대외양도 심사비준 또는 비안문건  ③ 경내기구와 경외투자자가 서명한 양도계약 주요조항 사본 (불량자산과 담보사항 거래이력 데이터는 제공할 필요 없음)  ④ 경내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대리계약  ⑤ 전술한 자료와 관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보충자료.  (3) 외환국이 금융자산관리회사 불량자산 처리 수입 외환결제에 대한 심사비준을 취소하고, 은행이 직접 처리하는 기장 또는 외환결제 수속을 개선한다.  불량자산을 출양한 경내기구가 경외투자자로부터 상응한 대금을 받은 후 아래 자료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서 외환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외환수입을 보존하거나 불량자산을 신청하여 외환수입을 결제한다.  ① 신청서  ② 경외투자자 불량자산 양수 처리 등기 시 취득한 자본프로젝트 정보시스템 <협의처리증빙>(사본)  ③ 채권 양도계약 주요조항 사본  ④ 전술한 자료와 관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보충자료.  경내기구가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수입을 보존하거나 불량자산을 처리하고 외환수입을 결제수속할 때 국제수지, 외환계좌와 외환결제의 유관 신청보고 요구에 따라 신청보고를 진행하고 “외환국승인번호/비안보고번호/업무일련번호”란에 대응되는 경외투자자가 경내불량자산을 양수함으로써 등기된 업무일련번호를 기입한다.  (4) 환매, 매각(양도), 회수완료, 주식전환 또는 기타 원인에 인해 경외투자자가 자산의 소유권 변경 또는 소멸을 등기할 때, 경외투자자 또는 대리인은 소유권 변경 또는 소멸 후 30 영업일 내 지역 외환국에서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변경 또는 말소수속을 처리한다.  (5) 외환국의 경외투자자 불량자산 처리 소득수익 구매지불송금 심사비준을 취소하고, 은행이 심사비준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경내불량자산 양수의 경외투자자가 청산, 재양도 등 방식을 통해 취득한 수익은 아래의 자료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대외 구매지불송금 수속을 처리하여 신청한다.  ① 신청서  ② 자본프로젝트 정보시스템 <협의처리증빙>  ③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표> 사본  ④ 불량자산 처리 수익원천 증명에 관한 문건  ⑤ 경내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대리계약  ⑥ 전술한 자료와 관련하여 제공된 보충자료.  경외투자자가 대외 구매지불송금 수속을 처리할 때, 국제수지의 유관 신청보고 요구에 따라 신청보고를 진행해야 하고 “외환국승인번호/비안보고/업무일련번호”란에 경외투자자가 경내불량자산을 양수함으로써 등기된 업무일련번호를 기입한다.  (6) 은행은 경내기구 외환계좌 개설하여 외환수입 보존하고 불량자산 외환수입 결제 처리와 경외투자자가 대외 구매지불송금 수속을 처리할 때 기입된 경외투자자가 경내불량자산을 양수함으로 등기된 업무일련번호를 성실히 심사비준하여야 한다.  (7)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로 인해 기존 담보의 수익인이 경외투자자로 변경되면, 해당담보는 대외담보관리에 속하지 않는다.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후 새로이 발생하는 대외담보는 현행 대외담보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를 진행한다.  3. 경내기구 경외직접투자 전기비용 관리 진일보 완화  (1) 경외직접투자 전기비용(이하 전기비용) 누계송금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국측 투자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경내기구는 영업집조와 조직기구대마증에 의거하여 소재지 외환국에 전기비용 등기를 처리한다.  (2) 전기비용 누계송금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중국측 투자총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경내기구는 영업집조와 조직기구대마증을 제출하는 것 외에 소재지 외환국에 경외직접투자 투자주관부문에 기 보고한 서면 신청서 및 경내기구가 임찰, 합병 또는 합자〮합작 프로젝트 참여에 관련한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하여 전기비용 등기를 처리한다.  (3) 경내기구는 송금 전기비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경외직접투자 주관부문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재지 외환국에 전기비용 사용현황과 잉여자금 반환을 보고해야 한다. 객관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경내기구는 소재재 외환관리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내기업 경외대출관리 진일보 완화  (1) 경내기업 경외대출주체 제한을 완화한다. 경내기업은 경외와 실제 주권관련 관계의 기업대출을 허가한다. 경내기업은 경외대출협의에 의거하여 최근 1분기 재무회계감사보고를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 경외대출한도 등기를 처리하고 경내기업 누계 경외대출한도는 소유자권익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술한 비율을 초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내기업 소재지 외환분국(외환관리부)에서 개별안건 집체심의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2) 경외대출한도 2년 유효 사용기한제를 취소한다. 경내기업은 실제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소재지 외환국에 경외대출한도 기한을 신청한다.  (3) 명확한 객관적인 원인으로 경외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면 경내기업은 소재지 외환분국(외환관리부)에 해당 경외대출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경내기업 소재지 외환분국(외환관리부)으로부터 개별안건 집체심의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경외대출이 원리금 지급 완결(채무주식전환, 채무면제, 담보계약이행 포함)되거나 경외대출 말소 후 경외대출을 다시 진행하지 않은 경우 경내기업은 소재지 외환국에 신청하여 경외대출한도 말소를 처리한다.  5. 경내기구 이윤송금 관리 간소화  (1) 은행은 경내기구가 등가 5만 달러(함) 이하 이윤송금을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거래증을 재심사비준하지 아니한다; 등가 5만 달러 이상 이윤송금은 원칙상 재무회계감사보고와 험자보고를 재심사비준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원칙에 따라 심사비준 해야 하며 본 이윤송금과 관련된 동사회 이윤배당결의(또는 공동출자자 이윤배당결의) 및 세무비안표 원본으로 처리한다. 매건 이윤송금 후 은행은 관련된 세무비안표 원본에 해당 건 실제 이윤송금금액 및 송금날짜를 날인 및 서명한다．  (2) 기업 당해년도 이윤금액 처리는 원칙상 최근 1기 재무회계감사보고　중 외국측 주주에 속하는 “미지급배당금”과 “미배당이윤”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을 취소한다.  6. 개인자산이동 판매지불송금 관리 간소화  (1) 이민재산이동 구매지불송금 심사비준은 이민 원본호적 소재지 외환국이 담당하여 심사비준한다. 상속재산이동 구매지불송금 심사비준은 피상속인 생전호적 소재지 외환국이 담당하여 심사비준한다. 재산이동 총 금액이 등가 50만 위안 초과 시 국가외환관리국에 비안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취소하였다.  (2) 이민재산이동 분할 송금의 요구를 취소한다. 신청인은 원본호적 소재지 외환국에 이민재산이동 심사비준 수속을 처리한 후 은행이 건별 금액한도 내로 심사비준하여 관련 자금을 1회 또는 분할하여 송금한다.  (3) 상속인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구분 신청과 구분 송금해야 하는 요구를 취소한다. 상속인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하고그 중 한 명의 피상속인 생전호적 소재지 외환국을 선택하여 모든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비준을 거친 후 은행이 관련 자금을 1회 또는 분할하여 송금한다.  (4) 유관재산권리 문건(방산증, 방산 매매계약 또는 철거보상안치협의, 도급/리스 계약 또는 협의, 재산양도 협의 또는 계약, 특허권사용 협의 또는 계약 등)에 대해 공증의 요구를 진행하는 것을 취소하며; 위탁대리협의, 대리인 신분증명에 대해 공증의 요구를 취소한다.  7. 증권회사 <외환경영 증권업무 허가증>관리 개선  외환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유관규정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외환경영 증권업무 허가증>(이하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회사명의 변경, 외환업무범위조정 등 상황으로 인해 유관규정에 따라 <허가증> 재발급을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 외에 본 통지 실시일로부터 증권회사는 정기적으로 <허가증>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허가증>을 기 수령하여 외환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매년 1월 31일 전 소재지 외환국에 전년도 외환업무 경영상황의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포함내용 : 회사 외환업무 경영 구체적 상황, 외환업무종류, 구매 외환결제 및 자금 송출∙입 상황, 외환업무 합리적 상황과 관련 외환업무 자산부채표 등)  본 통지는 2014년 2월 10일로부터 시행하고 본 통지에 부합되지 않는 이전규정은 본 통지로써 준한다.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최대한 빠르게 본 통지를 직할시 내 중앙지국, (일반)지국과 직할시 내 은행에 전달하며; 각 중자은행도 최대한 빠르게 본 통지를 분지기구에 전달한다. 집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프로젝트 관리사에 피드백한다.  첨부문건 :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표  국가외환관리국  2014년 1월 10일  관련정보:  첨부문건1: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표 |  | **国家外汇管理局**  **关于进一步改进和调整资本项目外汇管理政策的通知**  汇发[2014]2号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银行：  为进一步深化资本项目外汇管理改革，简化行政审批程序，促进贸易投资便利化，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相关规定，国家外汇管理局决定进一步改进资本项目外汇管理方式，并调整部分资本项目外汇管理措施。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简化融资租赁类公司对外债权外汇管理  （一）融资租赁类公司包括银行业监管部门批准设立的金融租赁公司、商务主管部门审批设立的外商投资租赁公司，以及商务部和国家税务总局联合确认的内资融资租赁公司等三类主体（以下统称为融资租赁类公司）。  （二）融资租赁类公司或其项目公司开展对外融资租赁业务时，应在融资租赁对外债权发生后15个工作日内，持以下材料到所在地外汇局办理融资租赁对外债权登记，所在地外汇局应当审核交易的合规性和真实性。  1.申请书，包括但不限于公司基本情况及租赁项目的基本情况；  2.主管部门同意设立融资租赁公司或项目公司的批复和工商营业执照；  3.上年度经审计的财务报告及最近一期财务报表；  4.租赁合同及租赁物转移的证明材料（如报关单、备案清单、发票等）。  （三）融资租赁类公司开展对外融资租赁业务时，不受现行境内企业境外放款额度限制。  （四）融资租赁类公司可直接到所在地银行开立境外放款专用账户，用于保留对外融资租赁租金收入。  上述外汇资金入账时，银行应审核该收入的资金来源。该账户内的外汇收入需结汇时，融资租赁类公司可直接向银行申请办理。  （五）所在地外汇局应在资本项目信息系统中使用“境外放款”功能登记融资租赁类公司融资租赁对外债权签约信息，采取纸质报表统计提款信息。  融资租赁类公司收到对外融资租赁租金收入时，应按照国际收支的有关申报要求进行申报，在“外汇局批件号/备案表号/业务编号”栏中填写该笔对外债权的业务编号，并应按月向所在地外汇局报送融资租赁对外债权的发生和租金收入等情况。银行应通过资本项目信息系统反馈对外融资租赁租金收入等信息。资本项目信息系统有关模块功能完善后，按新的要求采集相关信息。  二、简化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外汇管理  （一）取消国家外汇管理局对金融资产管理公司对外处置不良资产涉及的外汇收支和汇兑核准的前置管理。  （二）简化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登记手续。有关主管部门批准境内机构向境外投资者转让不良资产后30日内，受让境内不良资产的境外投资者或其境内代理人应持以下材料到主要资产所在地外汇局或其境内代理人所在地外汇局办理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登记手续。  1.申请书，并填写《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登记表》（见附件）；  2.有关主管部门批准境内机构对外转让不良资产的核准或备案文件；  3.境内机构和境外投资者签署的转让合同主要条款复印件（无须提供不良资产及担保事项逐笔数据）；  4.若由境内代理人办理，还需提供代理协议；  5.针对前述材料需提供的补充材料。  （三）取消外汇局对金融资产管理公司处置不良资产收入结汇核准，改由银行直接办理入账或结汇手续。  出让不良资产的境内机构收到境外投资者的对价款后，可持以下材料直接到银行申请开立外汇账户保留外汇收入，或者申请不良资产外汇收入结汇。  1.申请书；  2.境外投资者受让不良资产办理登记时取得的资本项目信息系统《协议办理凭证》（复印件）；  3.债权转让合同主要条款复印件；  4.针对前述材料需提供的补充材料。  境内机构开立外汇账户保留外汇收入，或者办理不良资产外汇收入结汇手续时，应按照国际收支、外汇账户和结汇的有关申报要求进行申报，并在“外汇局批件号/备案表号/业务编号”栏中填写所对应的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登记的业务编号。  （四）因回购、出售（让）、清收、转股或其他原因导致境外投资者对登记资产的所有权变更或灭失时，境外投资者或其代理人应在所有权变更或灭失后30个工作日内到登记地外汇局办理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登记变更或注销手续。  （五）取消外汇局对境外投资者处置不良资产所得收益购付汇核准，改由银行审核办理。  受让境内不良资产的境外投资者通过清收、再转让等方式取得的收益，可持以下材料直接向银行申请办理对外购付汇手续。  1.申请书；  2.资本项目信息系统《协议办理凭证》；  3.《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登记表》复印件；  4.关于不良资产处置收益来源的证明文件；  5.若由境内代理人办理，还需提供代理协议；  6.针对前述材料需提供的补充材料。  境外投资者办理对外购付汇手续时，应按照国际收支的有关申报要求进行申报，并在“外汇局批件号/备案表号/业务编号”栏中填写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登记的业务编号。  （六）银行应认真审核境内机构开立外汇账户保留外汇收入、办理不良资产外汇收入结汇和境外投资者办理对外购付汇手续时填写的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登记的业务编号。  （七）因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导致原有担保的受益人改变为境外投资者的，该担保不纳入对外担保管理。  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后新发生的对外担保，按照现行对外担保外汇管理规定进行管理。  三、进一步放宽境内机构境外直接投资前期费用管理  （一）境外直接投资前期费用（以下简称前期费用）累计汇出额不超过300万美元，且不超过中方投资总额15%的，境内机构可凭营业执照和组织机构代码证向所在地外汇局办理前期费用登记。  （二）前期费用累计汇出额超过300万美元，或超过中方投资总额15%的，境内机构除提交营业执照和组织机构代码证外，还应向所在地外汇局提供其已向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报送的书面申请及境内机构参与投标、并购或合资合作项目的相关真实性证明材料办理前期费用登记。  （三）境内机构自汇出前期费用之日起6个月内仍未取得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核准或备案的，应向所在地外汇局报告前期费用使用情况并将剩余资金退回。如确有客观原因，境内机构可向所在地外汇局申请延期，但最长不超过12个月。  四、进一步放宽境内企业境外放款管理  （一）放宽境内企业境外放款主体限制。允许境内企业向境外与其具有股权关联关系的企业放款。境内企业凭境外放款协议、最近一期财务审计报告到所在地外汇局办理境外放款额度登记，境内企业累计境外放款额度不得超过其所有者权益的30%。如确有需要，超过上述比例的，由境内企业所在地外汇分局（外汇管理部）按个案集体审议方式处理。  （二）取消境外放款额度2年有效使用期限制。境内企业可根据实际业务需求向所在地外汇局申请境外放款额度期限。  （三）如确有客观原因无法收回境外放款本息，境内企业可向所在地外汇分局（外汇管理部）申请注销该笔境外放款，由境内企业所在地外汇分局（外汇管理部）按个案集体审议方式处理。境外放款还本付息完毕（含债转股、债务豁免、担保履约）或注销境外放款后，不再进行境外放款的，境内企业可向所在地外汇局申请办理境外放款额度注销。  五、简化境内机构利润汇出管理  （一）银行为境内机构办理等值5万美元（含）以下利润汇出，原则上可不再审核交易单证；办理等值5万美元以上利润汇出，原则上可不再审核其财务审计报告和验资报告，应按真实交易原则审核与本次利润汇出相关的董事会利润分配决议（或合伙人利润分配决议）及其税务备案表原件。每笔利润汇出后，银行应在相关税务备案表原件上加章签注该笔利润实际汇出金额及汇出日期。  （二）取消企业本年度处置利润金额原则上不得超过最近一期财务审计报告中属于外方股东“应付股利”和“未分配利润”合计金额的限制。  六、简化个人财产转移售付汇管理  （一）移民财产转移购付汇核准，由移民原户籍所在地外汇局负责审批。继承财产转移购付汇核准，由被继承人生前户籍所在地外汇局负责审批。取消财产转移总金额超过等值人民币50万元报国家外汇管理局备案的要求。  （二）取消移民财产转移分次汇出的要求。申请人向原户籍所在地外汇局办理移民财产转移核准手续后，银行可在核准件审批额度内一次或分次汇出相关资金。  （三）取消继承人从不同被继承人处继承的财产应分别申请、分别汇出的要求。继承人从不同被继承人处继承财产，可选择其中一个被继承人生前户籍所在地外汇局合并提交申请材料，经核准后可在银行一次或分次汇出相关资金。  （四）取消对有关财产权利文件（如房屋产权证、房地产买卖契约或拆迁补偿安置协议、承包或租赁合同或协议、财产转让协议或合同、特许权使用协议或合同等）进行公证的要求；取消对委托代理协议、代理人身份证明进行公证的要求。  七、改进证券公司《证券业务外汇经营许可证》管理  证券公司经营外汇业务应按有关规定向国家外汇管理局领取《证券业务外汇经营许可证》（以下简称《许可证》）。除因公司更名、外汇业务范围调整等情况需按有关规定及时申请换领《许可证》外，自本通知实施之日起，证券公司无需定期更换《许可证》。  已领取《许可证》经营外汇业务的证券公司应当在每年的1月31日之前，向所在地外汇局报送上一年度外汇业务经营情况的书面报告（内容包括：公司经营外汇业务具体情况、外汇业务种类、购结汇及资金汇出入情况、外汇业务合规情况及相关外汇业务资产负债表等）。  本通知自2014年2月10日起实施，以前规定与本通知不符的，以本通知为准。请各分局、外汇管理部尽快将本通知转发至辖内中心支局、支局和辖内银行；各中资银行尽快将本通知转发至分支机构。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资本项目管理司反馈。  附件：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登记表  国家外汇管理局  2014年1月10日  相关信息:  附件1: 境外投资者受让境内不良资产登记表 |